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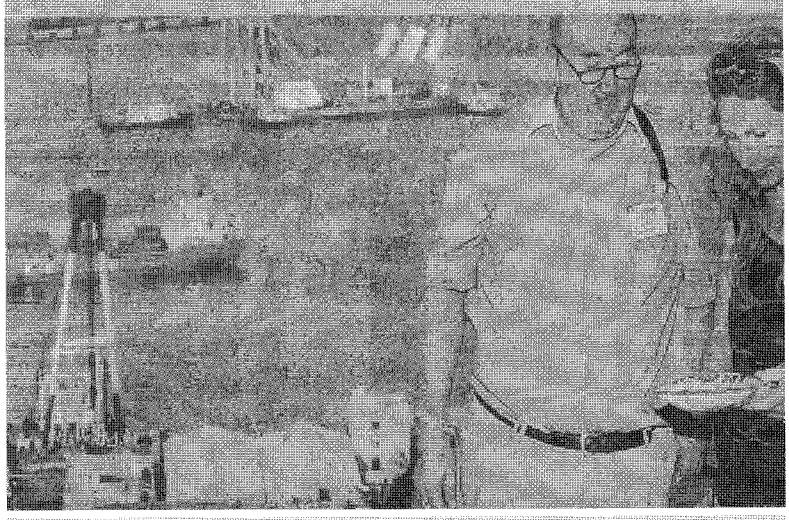

미국의 관세청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 또는 컨테이너에 미국의 최종 구매자가 눈에 띄는 곳에 읽을수 있고 지워지지 않도록 영어로 원산지 국가 이름을 표시하게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EU, 프랑스 등 선진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편집자주>

미국

가. Lanham Act

미국의회는 TRIPS 협정 제23조와 제24조에 대응하여 미국상표법(Lanham Act) 1052(a)를 개정

이는 포도주와 주류에 대한 원산지와 다른 지리적 표시를 금하였을 뿐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수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협정 제23조에 허가를 받지 않은 포도주나 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상표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지리적 표시를 금지할 뿐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오인을 유발하거나 허위 또는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했을 때는 표시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TRIPS 협정 제24조가 10년 이상 계속된 지적표시의 사용 또는 지리적 표시가 우루과이 협정 전에 선의로 사용된 경우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TRIPS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이 WTO 우루과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1년 전에 사용한 지리적 표시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WTO TRIPS 협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미국에 유리하게 수용한다.

나. 연방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의 원산지 국가 표시 관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관세청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가 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 관세법은 미국 관세청에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 또는 컨테이너에 미국의 최종 구매자가 눈에 띄는 곳에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영어로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표시하게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FTC는 수입된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 표시의 오기를 금지하게 불공정 경쟁 및 허위행위 및 관행을 금지할 수 있다.

다. United States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BATF")

BATF는 포도주를 포함한 알코올 음료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

BATF 포도주에 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광범위한 규칙을 공포

이 규칙들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의를 나열하고 있는데 "vermouth", "sake"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

EU 규칙 제2081호는 제2조에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원산지표시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의 전 과정이 해당지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리적 표시는 원료의 생산이나 가공 중 한 쪽만 해당지역 내에서 진행되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5조에는 등록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나 제15조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적인 조건 하에 개인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라 함은 법인 또는 비법인에 관계없이 같은 농산물이나 식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람들의 결합체를 말하고 다른 이익집단도 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제2항에서 단체나 개인은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 제2조 제2항 (a)와 (b)에서 규정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U규칙 제2081호에서는 특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개인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3년 7월 규칙 제2081을 개정하면서 단체가 아닌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놓았는데 지리적 표시 상품이 그 상품만의 고유의 특성이나 제조비법이 있을 때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체가 아닌 자연인이나 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놓았는데 지리적 표시 상품이 그 상품만의 고유의 특성이나 제조비법이 있을 때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 배경

-프랑스에서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산 포도 및 포도주에 밀려 자국산 포도관련산업이 위기에 직면(품질하락, 가격폭락, 표시문란)함에 따라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AOC(원산지명칭통제)제도를 도입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부르고뉴, 보르도 등 유명 포도주 지리적 표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부르고뉴, 보르도 등의 포도재배업자가 제도개혁을 요구

-1935년에 '포도주 및 증류주국가위원회'를 설치하고, 1947년에 INAO(국가원산지명칭관리소)를 설치하면서 AOC제도 본격화

· 평가

· 보호내용

〈행정적 보호〉

-AOC 이회의 상품과 상품의 포장, 영수증, 관계서류 등에 상품의 원산지의 오인을 야기시키는 모든 표시사항을 금지

-원산지명칭은 유사상품에 사용금지, 원산지명칭의 명성을 왜곡시키거나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도 사용금지

〈민사적 보호〉

-특정 원산지명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특정 상품의 원산지특성에 상반되도록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산지명칭 사용금지소송 제기 가능

〈형사적 보호〉

-부당성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AOC 상품에 첨가·제거 기타 손상을 가한 자와 부당성을 알면서 AOC 상품을 판매·출하·유통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함(행정적·민사적 금지사항 위반시에도 적용)